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60
----------	-------

발의연월일 : 2025. 12. 18.

발 의 자 : 이원택 · 김한규 · 윤후덕
주철현 · 문대림 · 이언주
최혁진 · 임미애 · 임호선
송옥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들의 불편 해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직권조치를 강화하며 말소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금 지원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포함되어 있는 농어업인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들이 일일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외에도 법원 행정처장, 생산자 단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및 위탁받은 자를 추가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자료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나. 농어업인들이 직접 방문, 전화 등을 통해 변경 정보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연계된 관련 정보로 확인하고,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함(안 제6조제1항).

다. 직권조치 강화 및 사망·거주불명시 획일적 말소에 따른 농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를 “직권으로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로 하고,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조사·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로 확대하며, 경영주가 사망하거나 거주불명일 때 경영주 외의 농어업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정보를 말소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6조의2제1항).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이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농어업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 제공 요청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마. 지자체장 등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체 보조사업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자금 지원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자금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함 (안 제8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제2조제16호 가목”을 “제2조제16호가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을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을 “공공기관의 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및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 전산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됨”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요청하여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정”을 “직권으로 정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경우”를 “경우(다만, 경영주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를 “등록정보가”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를 “결과와 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를 “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농어업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요청 근거, 요청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내용 및 활용 목적, 안전관리 대책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 -----제2조제16호가목----- ----- -----.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변경등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 ----- ----- ----- ----- ----- -----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

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고 있거나 위임 및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주민등
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 전산정보 등
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
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
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이 조에서 “수정등”이라 한다)
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
야 한다.

① -----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농어업경영체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우

가. (생략)

나.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
업인이 사망하거나 「주민
등록법」 제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거주불명인 경우

다. ~ 마. (생략)

3. ~ 5. (생략)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한 결과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가.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
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

-----직권으로 정
정-----.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경우
(다만, 경영주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정보가 없
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 마.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6. 등록정보가-----

결과와 다를 경우

<삭제>

<u>락처</u> <u>나. 농지·임야·축사 및 어</u> <u>장·양식시설의 소재지</u> <u>다.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u> <u>배 면적</u> <u>라.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u> <u>규모</u> <u>마.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u> <u>어업신고</u> ② ~ ④ (생 략)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농 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 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 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 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 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u><신 설></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① ----- ----- -----그----- ----- ----- ----- ----- ----- -----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u> <u>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u>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u> <u>농어업경영정보를 제공할 수</u>
--	--

<신 설>

<신 설>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
어업경영정보를 요청하는 경
우

③ 제2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
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요
청 근거, 요청하는 농어업경영
정보의 내용 및 활용 목적, 안
전관리 대책 등을 기재하여 문
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
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
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
는 아니 된다.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2. (생략)

3.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어업경영체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

1. 2. (현행과 같음)

3.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